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97
----------	-------

발의연월일 : 2026. 8. 14.

발 의 자 : 안태준 · 허성무 · 소병훈
박균택 · 정준호 · 조인철
이연희 · 부승찬 · 윤종균
복기왕 · 염태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법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 승인하려면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됨. 이는 광역도시계획에 신속하게 반영이 필요한 중요 전략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사업이 적기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를 개선하여 지역균형발전, 민생안정 등 시급한 필요성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의 추가를 위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의 적시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나. 토지의 이용 및 개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있는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을 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생활인프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내실있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22조).

다.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은 계획 수립 전 사전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계획의 집행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이를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절차는 미흡함. 이는 현행법 체계가 고도성장기에 형성되어 인구 성장에 대응한 신속한 토지공급과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임.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현 상황에서, 성장 중심의 경직적인 도시·군기본계획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과도한 인구 및 토지이용 계획으로 인해 난개발과 자원 낭비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시·군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군기본계획의 실행력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라.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및 건축물 계획은 반드시 포함하되 경관, 교통계획 등은 선택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그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필요성이 적은 계획까지 관행적으로 포함하여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항목만 규정할 수 있는 간편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5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⑦ 승인권자(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의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 중 지역균형발전이나 민생안정 등을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항·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인권자는 반영된 내용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개발”을 “개발,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반시설”을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 기간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에 반영할 수 있다. 추진실적 점검 주기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을 “제2호 및 제4호”로, “한다”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제1항 각 호 또는 각 호의 일부만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① ~ ⑥ (생략) <u><신설></u>	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승인권자(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의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 중 지역균형발전이나 민생안정 등을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항·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인권자는 반영된 내용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u>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7항----- ----- ----- -----.
제19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① 도시·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	제19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① ----- -----

③ (생 략) <u><신 설></u>	<u>정하여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 기 전에 그 사유와 연장한 기 간을 통보하여야 한다.</u>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협의 기간에 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은 산입하지 아 니한다.
제23조(도시·군기본계획의 정 비) ①·② (생 략) <u><신 설></u>	제23조(도시·군기본계획의 정 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 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1 항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에 반영할 수 있다. 추진 실적 점검 주기 등 점검에 필 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이 정한다.</u>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 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 ----- ----- 제2호 및 제4호-----

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8. (생략)

②·③ (생략)

④ 삭제

<신설>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다.

1.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제1항 각 호 또는 각 호의 일부만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